

# 부 산 가 정 법 원

## 제2가사부(항고)

### 결 정

사 건 2017브20048 개명

신청인 겸 사건본인, 항고인

갑 (89년 생, 남)

부산 북구

제1심 결정 부산가정법원 2017. 11. 22.자 2017호명9063 결정

### 주 문

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.

###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

제1심 결정을 취소한다. 등록기준지 밀양시 \*\*면 사건본인의 가족관계등록부 중 이름 'A'을 'B'으로 개명하는 것을 허가한다.

### 이 유

기록에 의하면 사건본인(이하 "신청인"이라 한다)은 2017. 9. 5.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,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받아 현재 집

행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. 또 신청인은 이 사건 신청 이후 범죄행위로 구속되어 부산구치소에 구금되어 있다 하여 송달장소를 부산구치소로 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.

사정이 이러하다면, 현 단계에서 신청인에게 개명을 허가하는 것은 동일성 인식에 대한 혼란을 초래하여 형사절차의 집행에 막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러한 점은 개명을 허가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된다 할 것이다.

제1심이 이러한 취지에서 신청인의 개명신청을 허가하지 아니한 조치는 정당하다.

따라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.

2018. 3. 23.

재판장	판사	구남수
	판사	이호철
	판사	주성화